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상태로 업무수행시
자격 취소 의무화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49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1549)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상태로 업무수행시 자격 취소 의무화 (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3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221154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8.
3.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상태로 업무수행 시 자격 취소 의무화 (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현행법¹⁾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

1)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18. 6. 1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구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8. 6. 12., 2020. 12. 22., 2024. 1. 16.>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운전·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 ----- -----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 2) 참고로, 음주 또는 약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검사불응시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음.

제7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현행	개정안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략)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 ----- ----- ----- ----- -----.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 ----- ----- ----- ----- -----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

현행	개정안
다. 1. ~ 6. (생략) ② · ③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등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제21조의 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자 및 철도운행관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등에서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관련 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음주운전의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³⁾을 제외하고 모두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경우 0.03%이상 0.1%미만이 적용됨.

또한 이들의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개월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시부터 면허취소를 하고 있음.

< 음주·약물 관련 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2], [별표 11의5], [별표 29]

처분대상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을 위반 하여 술에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관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을 위반 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을 위반 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이상 0.1% 미만)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다 철도사고를 원인을 제공한 경우	취소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을 위반 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관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위반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 0.1% 미만)에서 운전·관제한 경우	효력 정지 3개월	취소		
법 제41조제1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위반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1% 미만)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효력 정지 3개월	취소		
법 제41조제2항(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	취소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⁴⁾현황을 살펴보면, 총 4,730명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졌고, 2명을 적발하였음.

4) 음주·약물 단속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철도종사자 음주운전 단속현황 >

(단위 : 회, 명)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단속건수	129	99	280	266	314	1,088
단속인원	640	358	1,228	1,071	1,433	4,730
적발인원*	-	1	1	-	-	2

주 1. ('21년) 여객승무원 / ('22년)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등 취급자

주 2.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단속한 건을 대상으로 함(도시철도 제외)

자료 : 국토교통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철도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규모 사고 및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음주 등 행위를 한 철도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음주 등 행위를 한 철도업무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규정⁵⁾함으로써 철도업무 수행시 음주 또는 약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타 운전직군 종사자의 사업용 운전면허 또는 자격증명 취소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5)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음주 등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버스 또는 택시 운전자,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종사자⁶⁾,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경우 현행 철도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와 유사하게 측정 요구 불응 또는 일정 혈중 알코올농도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있고, 일부 음주운전의 경우 1차 위반시에는 효력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유사입법례와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타 운전직군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구분	행정처분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측정불응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1회 : 100일 정지 2회 : 면허취소
항공종사자	측정불응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2%~0.09%)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6)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항공종사자 등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제2211554호, 2025. 7. 18.)이 발의되었음.

구분	행정처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해기사 (「선박직원법」)	측정불응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주 : 혈중알코올농도 0.09% 또는 0.08% 이상은 면허취소

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안전법」, 「선박직원법」을 토대로 재작성

나. 관계 부처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도 철도종사자들의 음주·약물 행위에 대해 벌칙 및 자격 취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의무적 취소에 따른 심리적 경각심 제고와 철도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음주·약물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 동의함.

2) 법무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확인·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1회 위반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격이 영구취소되는 점, 유사입법례와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